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단위 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유기적인 집합체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전자계산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군·출장소(이하 시·군이름이라 한다)의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9.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의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부문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시행계획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시·군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 금융, 민간단체등의 장, 부시장·부군수, 도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국장 및 관할 지방체신청장으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산통계담당관이 된다.

⑤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협의회 운영과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0조(설치) ①도지사는 충청북도지역정보화본부(이하 “지역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전산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전산기계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산통계담당관이 된다.

제11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 전자계산조직설치 및 운영관리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사무

제12조(시설장비)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유지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3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수합,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주관부서가 수행한다.

②업무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전산정보 등의 제공) ①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업무주관부서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기관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업무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16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대상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할 때에는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 중복 정보화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표준화심의단에 정보화 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때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업무주관부서에서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 용역) ①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8조(저작권등록)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0조(설치) ①도지사는 충청북도지역정보화본부(이하 “지역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전산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전산기계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산통계담당관이 된다.

제11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 전자계산조직설치 및 운영관리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사무

제12조(시설장비)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유지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3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수합,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주관부서가 수행한다.

②업무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쇄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전산정보 등의 제공) ①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업무주관부서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기관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업무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16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대상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할 때에는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 중복 정보화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표준화심의단에 정보화 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때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업무주관부서에서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 용역) ①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8조(저작권등록)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계산조직운영

제19조(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설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운영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단말장치등의 설치운영) ①업무주관부서에서 단말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단말장치 등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업무처리) ①도지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도지사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유지보수) 도지사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3조(보안관리)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기계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설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 근무자중 중요업무 취급자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요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보호)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25조(주요화일의 보안대책) ①본부장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전산 기내에 구축된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정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27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PC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도지사는 정보화요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외부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 전문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시설·장비 확보)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및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방안 강구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기타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수당 등) 제7조에 의한 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또는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